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준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6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서준오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성준, 김영철, 김현기,
민병주, 박 석, 박승진,
서상열, 송도호, 왕정순,
이상훈, 이영실, 이용균,
이원형, 정준호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비용 및
완화규정을 신설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용을 50%로 함(안
제20조제1항)
- 나. 임대주택 건설비용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의결 통해 완화할 수 있도
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20조제8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50퍼센트 이상을”을 “50퍼센트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조같은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)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“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<u>50퍼센트 이상</u> 을 말한다. ② ~ ⑦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0조(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50퍼센트</u> 를 -----.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조같은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0조(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)제1항 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설정 및 그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 등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